

〈별표44〉 14대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14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14대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당뇨병	1. 당뇨병 질환 - 1형 당뇨병 - 2형 당뇨병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상세불명의 당뇨병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당뇨병성 백내장 - 당뇨병성 망막병증 - 당뇨병성 관절병증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E10 E11 E12 E13 E14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심장질환	2. 급성 류마티스열 3.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4. 허혈심장질환 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6. 기타 형태의 심장병 ↗(수막알균성 심장병) ↗(칸디다심내막염(I39.8*))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A39.5) ↗(B37.6)
고혈압	7. 고혈압 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고혈압성 심장병 - 고혈압성 신장병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이차성 고혈압 - 고혈압성 뇌병증 - 고혈압성 망막병증 [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I10 I11 I12 I13 I15 I67.4 H35.0 ^{주3)}
뇌혈관질환	8. 뇌혈관질환	I60~I69
간질환	9. 바이러스간염 10. 간의 질환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톡소포자충간염(K77.0*))	B15~B19 K70~K77 ↗(B25.1) ↗(B58.1)
위·십이지장궤양	11. 위궤양 12. 십이지장궤양 13.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5 K26 K27

분류항목		분류번호
갑상선질환	14. 갑상선의 장애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15.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16.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17.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00~E07 └(H06.2) E89.0 E89.0 E89.0
동맥경화증	18. 죽상경화증	I70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19.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2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2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22. 천식 23. 천식지속상태	J40 J41 J42 J45 J46
폐렴	2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25.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26.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2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2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수두폐렴(J17.1*)) └(폐독소포자충증(J17.3*)) 30.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31. 재향군인병 32. 폐렴이 합병된 홍역	J12 J13 J14 J15 J16 J17 └(B25.0) └(B05.2) └(B01.2) └(B58.3) J18 A48.1 B05.2
백내장	33. 노년백내장 34. 기타 백내장 35.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5 H26 H27
녹내장	36. 녹내장 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0 H42
결핵	38. 결핵 └(결핵관절염(A18.01†)) └(척추의 결핵(A18.00†)) └(뼈의 결핵(A18.02†)) └(결핵성 방광염(A18.11†))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결핵성 복막염(A18.30†)) └(장, 복막 및 장간막립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39. 결핵의 후유증	A15~A19 └(M01.1) └(M49.0) └(M90.0) └(N33.0) └(N74.0) └(N74.1) └(K67.3) └(K93.0) B90
신부전	40. 신부전	N17~N19

주) 1.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14대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해당 진단코드(H35.0)가 고혈압성이 아닌 망막병증도 함께 사용되므로 단순 진단코드로만 판단하지 않고 고혈압성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합니다. (예.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시 H35.02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